

교육운영 기준(규정 제17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반적 기준
1. 교육생 선발	<p>가.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전문교육과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·실행, 교육·훈련·개선 등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려는 사람 -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,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하려는 사람 <p>나.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기 가목의 계획관리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,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하려는 사람
2. 강사선정 및 교재(교안)작성	<p>가. 강사의 자격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해경감활동분야의 교육과정(교과목)을 강의할 수 있는 자로 기술사 또는 석·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. 다만, 재난관리정책 및 관련법규 등을 강의하는 공무원(퇴직공무원 포함)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p>나. 교재(교안) 작성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과목별 교재 및 교안을 작성 활용해야 하며 강사자격기준 이상의 사람이 작성하고 강사자격 이상의 자가 감수해야 한다.
3.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	<p>가. 교육과정은 각 교육분야별로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·운영해야 한다.</p> <p>나. 교육시간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전문교육과정 : 50시간 2)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 : 35시간
4. 교과목 편성기준	<p>가.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분야별 교육과정의 편성 내역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나.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내역을 변경, 개설 및 운영하려면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